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'88. 4. 30 개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소비자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등을 감안하여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재정보증한도액 110만원을 300만원으로 개정

첨 부

1.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11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개
<p>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재정보증한도액은 <u>110만원</u>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<u>300만원</u></p>